



## 명쾌한 수다

# 판례로 알아보는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까요?

### 〈사건 개요〉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회사인 A사는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C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C사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B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중국 회사법 규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B사는 이 사건 소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법률

#### 국제사법 제2조 (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기준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원심판결

원심은 일차적 분쟁 사안을 C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로 보았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에 본점을 둔 중국 회사이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점, 증거방법이 대부분 중국에 있는 점,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특별 재판권을 인정

하기 어려운 점 들을 들어 C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사의 주주인 B사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재판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8451)

##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 대법원 판결

〈국제재판관할에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관례는 『설령 채무자인 C사가 중국 법인이고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간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고, 특히 피고의 소송상 편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C사의 1인 주주인 피고로서는 C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C사의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甲 중국 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한 丙 중국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한 사례〉에 관하여 관례는 『또한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경우,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甲 중국 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한 丙 중국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고, 乙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위 소송을 수행하는 데 중국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 등이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丙 회사의 1인 주주인 乙 회사로서는 丙 회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丙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 회사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하는 점, 위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와 대한민국 법원 사이의 실

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판시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